

## 증권담보용자 거래 핵심(요약) 설명서

- ◆ 이 설명서는 증권담보용자 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증권담보용자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증권담보용자 거래의 구조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삼성증권이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 ◆ 증권담보용자 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이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주요 내용
증권담보용자	보유중인 유가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평가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 사용(매매 또는 출금)하는 거래
신용거래용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일부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등

-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에 대한 담보평가금액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계좌내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의 가중평균) 이상 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해 삼성증권이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최고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s://www.samsungpop.com>) 또는 패밀리센터(☎1588-2323, 080-911-0900)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권담보용자 거래설명서

## I. 증권담보용자 개요

### 1. 증권담보용자의 개념

- 증권담보용자(이하 '대출')란 고객이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결제 기준)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삼성증권은 담보가액(전일 종가 평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대출의 종류

일반 담보대출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한 국내 주식, 수익증권, 채권, 파생결합상품 등을 담보로 담보가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하는 거래
해외 주식 담보대출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담보로 원화로 평가한 담보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원화를 대출하는 거래
매도 담보대출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수익증권 등을 매도 체결하고 결제일 전에 매도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하는 거래로 결제일에 대출금이 상환되는 단기대출(연금저축담보대출 제외)

### 3. 대출 약정

- 대출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은 본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증권담보용자 약관을 숙지한 후 신청서를 통해 인지세 납부와 함께 증권담보용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단, 전자거래 서비스 약정이 체결된 고객에 한해 삼성증권 홈페이지, HTS/DTS 또는 mPOP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고객별 대출 한도 : 50억원(개별 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2) 대출이자 외 비용 : 약정 시 약정금액에 따른 인지세와 매도 상환 시 매매수수료 및 각종 세금 발생

① 인지세: 고객과 삼성증권이 각각 50%씩 부담

약정금액	인지세	
	고객	삼성증권
~ 5,0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175,000원	175,000원

※ 인지세는 계약 문서 작성에 대한 세금으로 약정 해지 시 **환급 불가 주의**

② 주식 매도 상환 시 수수료 및 각종 세금

- 삼성증권이 정한 매매 수수료를 적용

▪ 국내 주식 : [www.samsungpop.com](http://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업무/상품안내 > 수수료/예탁금이용료 안내

▪ 해외 주식 : [www.samsungpop.com](http://www.samsungpop.com) > 트레이딩 > 해외 주식 > 해외 주식거래안내 >

해외 주식거래절차 안내 > 주문/수수료

- 반대매매 주문은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

## II. 대출 금액 및 기간

### 1. 대출 금액

◎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한 대출 가능 잔고의 담보가액(전일 종가 평가)에 대출 비율을 반영한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단, 그룹 C 주식 종목은 신용/대출 합산 2억원 초과 불가)

### 2. 대출 가능 종목

- 1) 상장주식, 채권(A등급 이상) 및 삼성증권이 발행한 공모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공모 수익증권, 삼성증권이 지정한 해외 주식에 한해 가능
- 2) 시장 상황 및 삼성증권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종목과 한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시 신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3)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 > 인터넷뱅킹 > 신용/대출 > 신용/대출가능종목조회에서 확인 가능

### 3. 대출 비율 및 최소 담보유지비율

#### 1) 일반담보대출

구분		대출비율	담보유지비율
주식	그룹 S, A	60%	140%
	그룹 B, C	60%	150%
해외 주식	해외 주식	50%	160%
채권	국공채	65%	140%
	회사채(AA등급 이상)	65%	140%
	회사채(A등급 이상)	50%	150%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주식형	60%	150%
	혼합형	60%	150%
	채권형	65%	140%

	연금저축펀드	50%	140%
ELS 펀드 ELS/DLS	파생결합사채	65%	140%
	파생결합증권	50%	150%
	수익 확정 파생상품	65%	140%

## 2) 매도담보대출

- ① 국내 주식 : 결제재매매 금액의 98%
- ② 해외 주식 : 외화 결제재매매 금액 × 98% × 전 영업일 삼성증권이 고시한 최종 외화매도 기준환율의 95%
- ③ 수익증권(연금저축담보대출 제외)
  -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sup>주1)</sup> 이전 : 매도신청금액<sup>주2)</sup> × 대출비율
  -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sup>주1)</sup> 이후 : 매도정산금액 - 대출이자

주1) 기준가 적용시간, 별도 지정 없으면 13:00  
 주2) 수량 매도, 전액 매도 시 매도신청금액은 매도신청수량에 해당하는 세전 평가금액 (세전 평가금액 적용 기준가는 대출일의 기준가)

## 4. 대출 기간(만기일)

- 1)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최장 6개월
- 2) 채권 : 채권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최장 6개월) 중 먼저 다가오는 날
- 3) 수익증권(연금펀드 포함) : 펀드 청산일과 대출 만기일(최장 6개월) 중 먼저 다가오는 날
- 4) ELS/DLS : 상환 지급일과 대출 만기일(최장 6개월) 중 먼저 다가오는 날
- 5) 매도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매도 결제일까지

## Ⅲ. 이자 및 연체이자

### 1. 대출이자

#### 1) 증권담보대출 이자

- ① 이자율 적용 방식 : **체차법**
  - 체차법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대출 기간 중 일정 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
- ② 이자율 (단위: 연/%)

구분	대출기간				
	~30일	~60일	~ 90일	~ 180일	180일 초과
이자율	7.1%	7.6%	8.0%	8.3%	8.5%

※ 대출 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설명서 소비자보호 검토필 제22-0030호 [심의일 : 2022.07.01]

- 기준금리 : 직전월 4개 신용평가사 CP 1년물(A1등급) 평균금리
- 가산금리 : 리스크 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 제반 비용(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목표이익률을 반영
- 매월 기준 및 가산금리 공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 연금저축 이자율: 3%

- ③ 이자 납부일 : 매월 첫 영업일 정기이자 납부. 중도 상환 시에는 상환일  
※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연계된 계좌를 통해 이자 납부

④ 이자 계산

- 산식 : 대출금액 × 이자율 × (실행일~결제일까지 일수)/365 (일수 계산 : 한편냉기)
- 사례

9월 3일 최초 대출금 500만원 중 200만원은 20일 사용 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50일(9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사용 후 전액 상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 [일부상환] 9월 23일 200만원 일부 상환 시 납부하는 이자 금액 : **19,452 원**  
= 500만원 × 7.1% × (20/365)
- [정기이자] 10월 1일 300만원 정기이자로 납부하는 이자 금액 : **4,084 원**  
= 300만원 × 7.1% × (7/365)
- [전부상환] 10월 23일 300만원 전액 상환 시 납부하는 이자 금액 : **14,243 원**  
= (300만원 × 7.1% × (3/365)) + (300만원 × 7.6% × (20/365))

2) 매도담보대출 이자

① 이자율

-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매도담보대출 : 연 7.5%
- 펀드 매도담보대출 : 연 3.0%

② 이자 납부일 : 매도 결제일. 중도 상환 시에는 상환일

2. 중도상환 수수료 : 증권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모두 없음

3. 연체이자

- 최종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0%)로 구성되며 최대 9.0%를 적용

[연체이자 예시] 대출금 5,000만원에 31일간 만기 미상환 연체 시 대출 원금에 연체이자율 (예 : 9.0%) 적용해 상환 시 연체이자 **382,191원**(5,000만원×9.0%×31/365) 납부

## IV. 대출 상환 및 연장

### 1. 상환

1) 만기상환 : 만기일 다음 영업일에 계좌 내 현금으로 자동상환

(계좌 내 현금 부족 시 담보증권 반대매매 처리)

2) 중도상환 : 만기 전 매도 대금 및 현금으로 언제든지 상환 가능

- ① 매도상환 : 담보증권 일부 매도 시 매도 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② 현금상환 : 상환 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연계된 계좌를 통해 만기 및 중도상환 가능

## 2. 만기 연장

1) 만기 연장 조건 충족 시 만기 15영업일 이전부터 고객이 요청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2) 만기 연장 조건

- ① 담보증권이 대출 가능 종목일 것
- ② 계좌의 담보비율이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일 것
- ③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않은 고객
- ④ 신용연체정보 및 전자금융사기 등록 고객이 아닐 것

## V. 담보권의 실행(반대매매)

◎ 삼성증권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좌에 예약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임의 처분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1. 임의상환 사유

1) 담보유지비율 미달

- 계좌 담보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D일)하고, D+1일 08:00, D+2일 08:00 두 번 연속으로 담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D+2일 동시호가에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변제한다.
- 추가담보 납부 요구 및 반대매매 통보는 약정 시 정한 담보부족/반대매매 통보 수신처(이메일, SMS)로 한다.

2) 만기 미상환 : 만기일 다음 영업일 반대매매를 통해 변제한다.

3) 약관 제17조(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해당 시

### 2. 임의상환 처리 방법(반대매매)

1) 임의상환(반대매매)을 위해 처분하는 증권의 순서

- ① 현금(외화 포함) > 담보증권 > 그 밖의 증권
- ② 현금상환 방법
  - 반대매매일 **06:30, 08:15, 08:40, 08:50**경에 현금 상환  
(단, 외화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수작업 처리로 시간 변동 가능)
  - 현금상환 순서 : 원화(KRW) > 엔화(JPY) > 위안화(CNY) > 홍콩달러(HKD) > 미국달러(USD)

- 다수의 대출이 있는 경우 현금상환 순서
  - 그 외 증권의 담보대출 > 해외 주식 담보대출 > 국내 주식 담보대출
  - 다수 대출 중 대출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또는 알파벳 순)
- 현금상환 대상금액 산출 방법

현금상환 대상금액	=	$\frac{\text{담보부족액}}{[(\text{담보유지비율} - 1) - (\text{담보유지비율} \times (\text{경과일수} / 365^{\text{주}})) \times \text{이자율}]}$
--------------	---	--

주) 율년의 경우 366일

※ 단, 전체 현금상환 대상금액은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나, 실제 다수 대출 중 일부 상환 시에는 개별 대출에 적용되는 실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환됨

- ③ 담보증권 반대매매 순서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그 외 증권
  - 대출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또는 알파벳 순)
- ④ 담보 외 증권 반대매매 순서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그 외 증권
  - 최근 매입일 > 종목번호 빠른 순(또는 알파벳 순)
- ⑤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 : 한국 > 일본 > 중국(상해, 심천, 홍콩) > 미국

## 2) 반대매매 방법

- ① 국내 주식 : 증권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시장가)  
단, K-OTC 등 시장가 주문 불가 시 매도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최초의 가격에 따라 처분
- ② 해외 주식 :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도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최초의 가격에 따라 처분  
(단, 삼성증권 영업시간(09:00~16:00) 이외에 주문 거부 사유가 발생되면 다음 날로 주문이 순연될 수 있음)
- ③ 수수료 : 오프라인 수수료율(지점/패밀리센터)을 적용  
(<http://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업무/상품안내 > 수수료/예탁금이용료 안내)

## 3)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

- 각종 거래비용을 제외한 매도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
- 수도결제, 미상환 용자 상환 등 현금미수 반영 후에 이를 감안해 담보부족 반대매매 수량 산정 작업을 진행한다.
- 수량 계산 시 매도가격은 전일 종가 기준 S, A 등급은 85%, B등급 이하는 80%로 한다. 단, 시초가 주문체결 후 담보부족 미해소 시 부족분만큼 하한가 및 해소 가능 수량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반대매매를 요청할 수 있다.
-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담보비율

담보유지비율	=	$\frac{[\text{기준가격} \times (\text{보유수량} - X)]}{[\text{신용공여잔고} - (\text{매도가격} \times X)]}$
--------	---	---

주식처분 수량[X]	=	$\frac{(\text{신용공여잔고}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전일 증가)} \times \text{보유수량}}{(\text{매도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전일 증가)}}$
---------------	---	--

※ 반대매매 증권의 처분 순서에 따라 매매수량 단위로 증가(1주 ~대출잔여수량까지)하면서 임의상환(반대매매) 후 담보비율을 가계산함

#### 4) 수익증권담보대출

- 수익증권 담보부족 반대매매 산정 방법

- 반대매매 대상금액을 산출하고 당일 펀드 기준가의 95%의 매도가격으로 처분 수량 산정

반대매매 대상금액	=	$\frac{\text{담보부족액}}{[(\text{담보유지비율} - 1) - (\text{담보유지비율} \times (\text{경과일수} / 365 \text{주})) \times \text{이자율}]}$
--------------	---	--

※ 처분 수량: 수익증권 반대매매 대상금액/매도가격

※ 단,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부족 해소를 위한 상환금액 산정 시 기타소득세 발생 등의 사유로 반대매매 수량이 기준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음

- 수익증권 만기 미상환 반대매매 산정 방법

- 만기 미상환 미수금 + 결제 예정일까지 연체이자로 수량 변환 없이 금액으로 환매 신청

※ 단,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만기 미상환금액 산정 시 기타소득세 발생 등의 사유로 반대매매 금액이 기준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음

- 수익증권 반대매매를 위한 환매 청구 시간

- 반대매매를 위한 환매 신청 시간은 12:00 이전으로 한다.

- 연금저축 과세 관련 사항

· CMA 계좌로 출금하는 시점에 연금계좌 인출 순서에 따른 자동과세 처리

· 연금계좌 인출 순서 :

- ① (과세 제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 ② (과세) 퇴직금
- ③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 5) 반대매매 사례

- ① 추가담보 미납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 산정

- 국내 주식 A등급 종목 1,000주 보유, 매수가 10,000원, 대출금 6,000,000원, 최소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인 경우

※ 각종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전일 증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 계산 시 아래와 같이 A종목 195주 매도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 고
D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67%	
D일 장마감	8,300원	8,300,000원	138%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8,100원	8,100,000원	135%	추가담보 미납(30만원 담보부족)
D+2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전일 증가(8,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85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 $195\text{주} = \frac{(6,000,000\text{원} \times 1.4) - 8,100 \times 1,000\text{주}}{(6,885\text{원} \times 1.4) - 8,100\text{원}}$ ※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경우 수량 전량 처분			

▪ 해외 주식 B종목 100주 보유, 매수가 100 USD, 대출금 6,000,000원,

최소담보유지비율 160%, 원/달러 환율 1,200원, 현금 0원인 경우

※ 각종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원/달러 환율 1,200원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

☞ 전일 증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 계산 시 아래와 같이 B종목 59주 매도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원화)	담보비율	비 고
D일 장중	100 USD	12,000,000원	200%	
D일 장마감	65 USD	7,800,000원	156%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66 USD	7,920,000원	158%	추가담보 미납(168만원 담보부족)
D+2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전일 증가(66 USD) 대비 15% 하락한 가격(56.10 USD)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 $59\text{주} = \frac{(6,000,000\text{원} \times 1.6) - (66\text{ USD} \times 100\text{주} \times 1,200\text{원})}{(56.10\text{ USD} \times 1,200\text{원} \times 1.6) - (66\text{ USD} \times 1,200\text{원})}$ ※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경우 수량 전량 처분			

② 만기 미상환 발생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 산정

▪ 국내 주식 증권담보대출금 5,000,000원, 국내 주식 A등급 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인 경우

※ 각종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 고
만기일	12,000원	12,000,000원	240%	
D+1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증가) 대비 -15%인 10,200원으로 할 경우, 증권담보대출금인 500만원(5,000,000/10,200=490.2) 상환을 위해 491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 고
만기일	4,000원	4,000,000원	80%	
D+1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증가) 대비 -15%인 3,400원으로 할 경우, 증권담보대출금인 500만원(5,000,000/3,400=1,470.6) 상환을 위해 1,000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00만원을 추가 납부			

- **해외 주식** 증권담보대출금 5,000,000원, 해외 주식 종목 100주를 주당 100 USD에 매수, 원/달러 환율 1,200원, 현금 0원인 경우
  - ※ 각종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 원/달러 환율 1,200원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외화)	평가금액(원화)	담보비율	비 고
만기일	110 USD	13,200,000원	264%	
D+1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15%인 93.50 USD로 할 경우, 증권담보대출금인 500만원(5,000,000/(93.50 USD×(1,200원×0.95)) =46.91) 상환을 위해 47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외화)	평가금액(원화)	담보비율	비 고
만기일	30 USD	3,600,000원	72%	
D+1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15%인 25.5 USD로 할 경우, 증권담보대출금인 500만원(5,000,000/(25.50 USD×(1,200원×0.95)) =172) 상환을 위해 100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093,000원을 추가 납부			

**6) 반대매매 종목 교체 가능 시간**

- 반대매매 종목 교체는 반대매매 당일 08:50 전까지 요청한 고객에 한함
- 해외 주식은 일본, 중국(상해, 심천, 홍콩) 시장은 당일 08:50 전까지 요청, 미국 시장은 당일 16:00 전까지 요청한 고객에 한함.

※ 종목 교체 시 장 운영 시간이 다른 시장과의 교체는 불가

한국(09:00 시작)-일본(09:00 시작)→가능

한국(09:00 시작)-중국(10:30 시작)→불가능

## VI. 기타 유의사항

### 1. 해외 주식 대출 환율 적용

- ◎ 상환 및 임의상환 시 환율은 **전일 삼성증권이 고시한 환율의 95%**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 9:30 기준 실제 환전분과의 차이 및 제비용을 포함해 최종 정산한다.
- 예) 전일 삼성증권이 고시한 달러(USD) 환율이 1,000원인 경우 950원을 기준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실제 환율이 980원인 경우 이에 대한 차익(30원) 및 제비용을 정산

### 2. 출금·출고 제한

- 증권담보대출 계좌의 담보평가 비율이 삼성증권이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 내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출고가 제한됩니다.

### 3.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대출

#### 1) 담보종목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담보종목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일반 대출 기준과 별도의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여부를 삼성증권에 알려야** 합니다.

2) 삼성증권과 계열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등기임원 포함)은 증권담보대출을 약정·실행할 수 없습니다.

### 4. 약관·이자율 등 변경 공시

1) 삼성증권은 필요한 경우 **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연체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추가 담보 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삼성증권은 증권담보용자 이자율 등을 포함한 증권담보용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에 비치하거나 삼성증권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용 화면, 유사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 단,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 등 고객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개정 약관 시행일 20일 전에 알립니다.

이 때 고객이 안내받은 날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했다고 판단합니다.

※ 관련 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 변경이 급박하고 부득이하게 이뤄질 경우 개정 약관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 거부 의사를 명시한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1) 반대매매 후 최종 미납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변제전까지 매일 연체 이자율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2) 미납금 발생 후 **3개월간 미변제 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 3) 증권담보용자 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①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 거래로 인해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신용 거래, 증권담보용자 거래, 만기연장 등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④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 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 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에 따라 안내하는 내용으로 삼성증권의 증권담보용자 거래가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또는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6. 연금저축 담보대출

① 연금저축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부족에 따른 수익증권 반대매매 후 당해 납입분에서 상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및 연계 CMA 계좌 대체 출금액에는 연금저축 출금에 따른 일반 과세분이 포함됩니다. 펀드 반대매매 주문과 매도 결제 사이에 입금/출금이 발생하면 대체되는 금액이 상환금보다 많거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Ⅶ. 금융소비자의 권리

### 1. 청약 철회

1) 청약 철회 기한

-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2) 행사 방법

- 대출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삼성증권이 부담한 인지세를 삼성증권에 상환하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거나 패밀리센터(☎1588-2323) 혹은 지점에 전화해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철회 효과

- 삼성증권은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 삼성증권이 약정 시 부담한 인지세를 고객으로부터 반환 받고 3영업일 이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대출 내역 철회를 진행합니다.

4) 청약 철회권 적용 제외

- 단,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대매매로 처분된 경우,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① 삼성증권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제17조 제3항), 적정성 원칙(제18조 제2항), 설명의무(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내용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 등으로 삼성증권에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기간

-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과 삼성증권이 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를 요구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효과

- **위법계약해지** 시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열람요구권 행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제3항)

1) 열람요구 대상 자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2) 자료의 열람, 제한 또는 거절 등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 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법령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상품의 핵심 내용만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담보유자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